

「구미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, 안정적이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송사업자와 종사자를 지원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구미시 관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·마을버스·시외버스 운송사업을 재정 지원의 대상으로 규정함(안 제2조)
- 운송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 중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(안 제3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,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,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, 「경상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」, 「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」

○ 합 의 : 정책기획과, 감사담당관, 예산재정과와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상위법인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의거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교통약자와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만큼 합리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버스의 공공성을 강화시켜 시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나,
-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재정 지원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('23년 기준 : 18,090백만원 지원) 소관 부서에서 철저한 관리·감독을 하여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